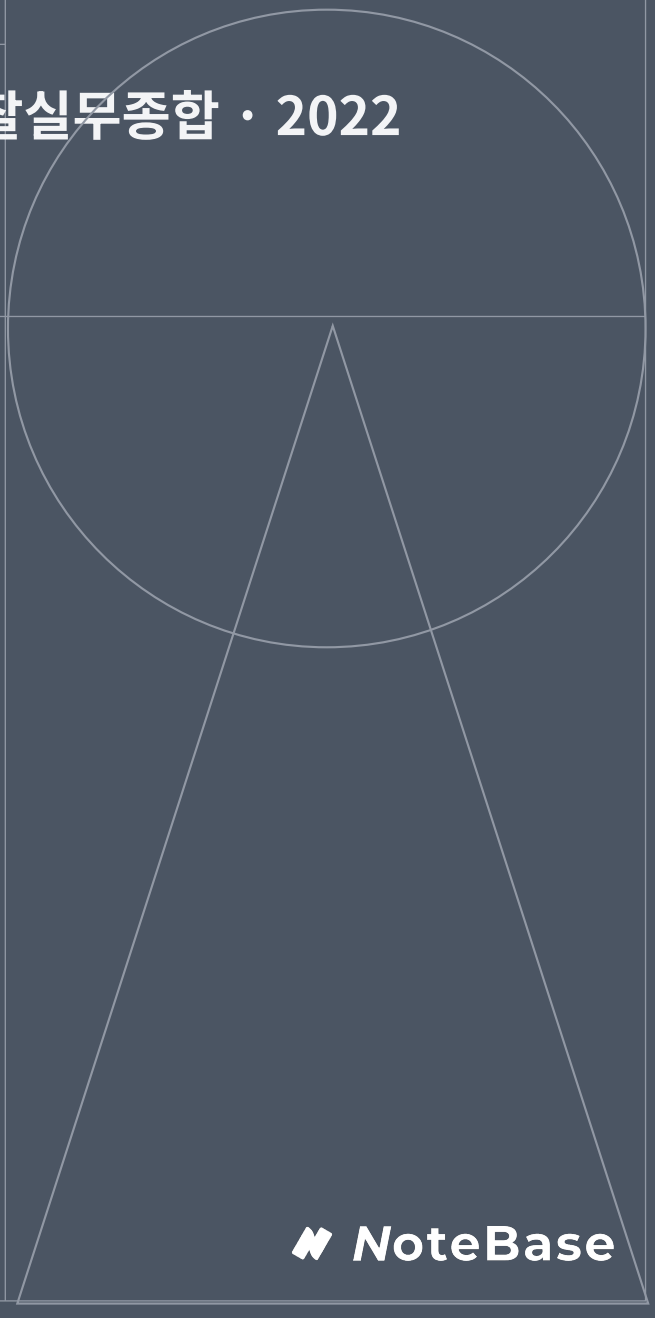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2

공무원/경찰/승진시험 · 경찰실무종합 · 2022

문 1.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안병하 치안감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서 전라남도 경찰들에게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적하지 말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여 (㉠)에 입각한 경찰권 행사 및 시위대의 (㉡)를 강조하였다.

① ㉠ - 호국정신 ㉡ - 인권보호

② ㉠ - 비례의 원칙 ㉡ - 질서유지

③ ㉠ - 호국정신 ㉡ - 질서유지

④ ㉠ - 비례의 원칙 ㉡ - 인권보호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분산되는 시위대를 과도하게 추적하지 말라는 지시는 경찰권 행사를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는 **비례의 원칙**을 나타낸다. 연행 중 학생의 피해를 막으라는 지시는 시위대의 **인권보호**를 강조한 것이다.

빈칸별 해설

㉠ 비례의 원칙: 경찰권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미 분산되는 사람을 지나치게 추적하지 말라는 지시는 **과도한 경찰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한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해당한다. 호국정신은 나라를 지키려는 정신으로, 이 지시가 보여 주는 경찰권 행사 정도의 한계를 직접 설명하는 원칙은 아니다.

㉡ 인권보호: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는 지시는 시위대도 경찰이 보호해야 할 권리의 주체임을 전제로 한다. 연행할 때에도 **학생의 생명·신체와 기본적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질서유지도 경찰의 임무이지만, 제시된 지시가 직접 강조하는 것은 시위대의 인권보호이다.

따라서 ㉠은 비례의 원칙, ㉡은 인권보호이며, 이 조합에 해당하는 선택지는 ④이다.

NoteBase

문 2. 경찰의 기본적 임무인 '위험의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개입을 위해서는 구체적 위험이 존재해야 하지만, 범죄예방 및 위험방지 행위의 준비는 추상적 위험 상황에서도 가능하다.

② 오상위험이란 경찰이 상황을 합리적으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위험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여 개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험이 없던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 판단을 할 때, 위험의 발생 가능성은 예측되지만, 위험의 실제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손해란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행위를 의미하고 정상적 상태의 객관적 감소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은 경찰개입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했는데도 실제로는 위험이 없었던 경우는 **'외관상 위험'**이다. '오상위험'은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위험이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개별 사안에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위험방지조치는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구체적 위험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범죄예방이나 위험방지를 위한 **비침해적인 준비활동**까지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뒤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준비는 아직 개별 위험이 구체화하지 않은 추상적 위험 단계에서도 가능하다.

② X: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에 따라 위험이 있다고 보았으나 사후적으로 실제 위험이 없었다고 밝혀진 것은 **'외관상 위험'**이다. 이 경우 개입 당시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경찰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되며, 보상 요건을 갖추면 그 조치로 생긴 손실에 대해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오상위험'은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으로 위험이 있다고 여긴 경우이다. 이에 따른 경찰개입은 위법하며,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의 요건 충족 여부를 따지게 된다.

③ O: '위험혐의'는 신중하게 판단하더라도 손해 발생의 가능성은 있으나 **위험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개입 당시 위험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하는 외관상 위험과 달리, 경찰도 위험이 없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④ O: 경찰법상 손해는 보호되는 법익의 정상적인 상태가 객관적으로 감소하거나 침해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보호법익에 대한 현저한 침해에 이르지 않는 **단순한 성가심이나 불편함만으로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개입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개인의 주관적인 불쾌감이 아니라 보호법익에 대한 객관적인 침해 여부이다.

NoteBase

문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시·도경찰청 차장은 시·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더라도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없다.

정답 4번

①

시·도경찰청장 임용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한 뒤,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시 · 도경찰청장)
②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시 · 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시·도경찰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시 · 도경찰청 차장)
② 차장은 시 · 도경찰청장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시 · 도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 수사의 지휘·감독 주체는 **국가수사본부장**이며, 그 대상은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 ·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 · 감독한다.

NoteBase

④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수사본부장)
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NoteBase

문 4.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에는 공무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 임용령」상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법」상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정답 2번

①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지구대장이나 파출소장을 보직할 때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⑨ 시 ·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에는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야 한다. <신설 2020.12.31>

②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의 연수는 **본인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청원휴직 사유**이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5.23, 2013.8.6, 2015.5.18, 2015.12.24, 2021.6.8, 2024.12.31, 2026.6.2>
3.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NoteBase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조(경과)
②임용권자(제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천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 경과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6.12.30, 2017.7.26, 2020.6.23, 2020.12.31>

④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①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한다.

NoteBase

문 6.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법」상 모든 계급의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상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을 지휘하는 사람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직자윤리법」은 총경(자치총경 포함)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를 재산등록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답 1번

①

의사에 반한 휴직·강임·면직을 제한하는 신분보장 규정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공무원법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직위나 직권을 이용하여 타인의 민사분쟁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Base

③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작전수행 중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이 우려되는 위급한 사태에서는 지휘·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 근무지에서 진출·퇴각·이탈하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공무원법 제25조(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전시 ·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이거나 작전수행 중인 경우 또는 많은 인명 손상이나 국가재산 손실의 우려가 있는 위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지휘 · 감독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 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경찰공무원을 지정된 근무지에서 진출 · 퇴각 또는 이탈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공무원 중 재산등록의무자는 법률상 **총경(자치총경 포함) 이상**이며, 시행령상 **경정·경감·경위·경사와 자치경정·자치경감·자치경위·자치경사**도 포함된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1.7.29, 2012.12.11, 2013.3.23, 2014.12.30, 2015.12.29, 2017.7.26, 2019.12.10, 2021.4.1, 2023.12.26, 2026.8.4>
9.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4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등록의무자)
⑥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5.13, 2011.10.28, 2013.11.20, 2014.1.7, 2014.11.28, 2016.6.28, 2016.11.29, 2017.1.10, 2017.1.31, 2018.7.24, 2020.3.10, 2020.6.2, 2020.7.14, 2020.9.10, 2020.12.31, 2021.9.24, 2024.6.25, 2025.10.1, 2026.9.29>
6. 경찰공무원 중 경정, 경감, 경위, 경사와 자치경찰공무원 중 자치경정, 자치경감, 자치경위, 자치경사

NoteBase

문 7. 고충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4번

①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직무 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관한 고충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① 공무원은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그 밖에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고충심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담당한다.

경찰공무원법 제31조(고충심사위원회)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한다.

NoteBase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2.1.25>

④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나 성희롱 발생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고충 처리)
③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NoteBase

문 8. 경찰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영역에서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는 물론, 개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경찰행정관청의 특정행위가 공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으며, 달성되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더 커야 적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 있다.

③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은 경찰기관의 어떤 조치가 경찰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하여도 그 조치에 따른 불이익이 그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경찰권을 발동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④ 경찰비례의 원칙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를 위반한 경찰작용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4번

①

비례의 원칙은 행정작용 전반을 구속하므로 경찰권의 근거가 **일반적 수권조항이든 개별적 수권조항이든 적용**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②

경찰작용은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국민의 피해가 가장 적은 수단**이어야 한다. 또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법익의 균형**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NoteBase

③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치라도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성의 원칙이다.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④

경찰권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하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문 규정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부분이 틀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②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문 9.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상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은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던 중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제지'는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며,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져야 하므로 해당 집회 참가가 불법 행위라도, 집회 장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제지할 수 없다.

정답 1, 2번

①

청구서의 제출처는 **사건 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사건 발생지 관할 기관 소속이 아니면 그 경찰관이 소속된 시·도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경찰관서의 장에게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0조(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9.19, 2025.4.29>
1.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2.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 다만, 직무를 집행한 경찰관이 손실보상청구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 · 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 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시 · 도경찰청, 지방해양경찰청 또는 경찰관서의 장을 포함한다.

NoteBase

②

미아·병자·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고 응급구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도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면 이 사유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 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만,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되면 **질문을 위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은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 · 지구대 · 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NoteBase

④

제지는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행정상 즉시강제로서 불가피한 최소한도에서만 허용**된다. 불법집회 참가를 막기 위한 경우에도 **집회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출발·이동을 제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

한편,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거나 관할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집회·시위를 주최한 사람 또는 그 정을 알면서 참가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지만 그 미수행위 또는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두지 않았고, 위 법률 제18조에서 집회·시위가 위 법률에 위반되는 일정한 경우 이를 이유로 사후에 그 집회·시위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위반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그러한 집회·시위 자체를 사전에 미리 제지하거나 봉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따로 두지 않았다.

위와 같은 관련 법률 조항들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비록 장차 특정 지역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그 주최 또는 참가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집회·시위가 개최될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그 집회·시위에 참가하기 위하여 출발 또는 이동하는 행위를 함부로 제지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행정상 즉시강제인 경찰관의 제지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제지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포함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NoteBase

문 10.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 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의 제시의무는 없다.

④ 경찰관은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국민의 자유·권리와 모든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②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 한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은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④ 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이 하는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④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위험 상황에서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경찰관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차에 출입**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 · 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 · 건물 · 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NoteBase

문 11. 경찰장비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경찰관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① ㉠(X) ㉡(O) ㉢(O) ㉣(X)
② ㉠(O) ㉡(X) ㉢(O) ㉣(X)
③ ㉠(X) ㉡(X) ㉢(X) ㉣(O)
④ ㉠(X) ㉡(X) ㉢(O) ㉣(O)

정답 4번

㉠
새로 도입하는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 결과보고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경찰장비의 사용 등)
⑤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전자충격기·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은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이다. 65세 이상의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전자충격기등의 사용제한)
①경찰관은 14세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NoteBase

㉢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를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6>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

범인 체포·도주 방지, 생명·신체의 방어·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 제지를 위한 무기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무기의 사용)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NoteBase

문 12. 비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모든 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은 임용과 동시 III급 비밀취급권을 가진다.

②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상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보직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상 보호지역 중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④ 「보안업무규정」상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급 비밀에 해당한다.

정답 4번

①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I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① 모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3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치안정보 담당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II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신원특이자는 사전에 인가 여부의 적절성에 관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찰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4조(특별 인가)
② 경찰공무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부서에 근무하거나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치안정보, 수사, 안보수사 및 국제협력 담당 부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원특이자에 대해서는 2급 비밀취급 인가 여부의 적절성에 관하여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신원특이자 소속기관의 자체 심의기구에서 신원특이자의 2급 비밀취급 인가 여부를 심의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NoteBase

③

제한구역은 비인가자가 비밀·주요시설·III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이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4조
2. 제한구역: 비인가자가 비밀, 주요시설 및 3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를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 구역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III급비밀**이다. II 급비밀은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5.19>
2. 2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3. 3급비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

NoteBase

문 13. 경찰의 부패원인 가설에 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 P경찰관은 부서에서 많은 동료들이 단독 출장을 가면서도 공공연하게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퇴근 후 잠깐 들러서 시간외 근무를 한 것으로 퇴근시간을 허위 기록되게 하는 것을 보고, P경찰관도 동료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 경찰관은 순찰 중 주민으로부터 피로회복 음료를 무상으로 받았고, 그 다음주는 식사대접을 받았다. 순찰나갈 때 마다 주민들에게 뇌물을 받는 습관이 들었고, 주민들도 경찰관이 순찰을 나가면 마음의 선물이라며 뇌물을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① ㉠ - 전체사회 가설 ㉡ - 구조원인 가설
② ㉠ - 썩은 사과 가설 ㉡ - 구조원인 가설
③ ㉠ - 구조원인 가설 ㉡ - 전체사회 가설
④ ㉠ - 구조원인 가설 ㉡ - 썩은 사과 가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은 **조직 내부의 부패 관행을 보고 따라 하는 사회화**가 나타나므로 구조원인 가설에 해당한다. ㉡은 **주민들의 뇌물 제공 관행**이 경찰의 부패를 조장하므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대응 관계 해설

㉠ → 구조원인 가설: 구조원인 가설은 경찰조직 내부의 부패 관행과 문화에 구성원이 사회화되면서 부패하게 된다고 본다. P경찰관은 동료들이 혼자 출장하면서 두 사람의 출장비를 청구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까지 시간외 근무로 기록되게 하는 것을 보고 같은 행동을 하였다. 따라서 핵심은 **조직 내부에서 부패 행동을 학습하고 따라 한다**는 점이다. 경찰관 개인의 윤리적 결함에서 부패 원인을 찾는 '썩은 사과 가설'과 구별된다.

㉡ → 전체사회 가설: 전체사회 가설은 시민사회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데서 부패 원인을 찾는다. 사례에서는 주민의 음료와 식사 제공을 거쳐 뇌물을 주고받는 일이 습관화되었고, 주민들도 이를 '마음의 선물'이라며 관례로 받아들였다. **시민사회의 뇌물 제공과 용인**이 경찰의 부패를 지속시키는 환경이 된다는 점에서 전체사회 가설에 해당한다. 경찰 동료들의 관행을 학습하는 ㉠과는 부패를 조장하는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은 구조원인 가설, ㉡은 전체사회 가설이며, 이 대응을 제시한 선택지는 ③이다.

NoteBase

문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만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직급에 상관 없이 모든 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30만 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45만 원이다.

④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렸다면 이와 별도로 거절하는 의사는 명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1번

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나 기부·후원·증여 등의 명목과 관계없이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 후원 ·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NoteBase

③

경찰공무원 등 일반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원칙적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1시간당 40만 원**이며, **1시간을 초과해도 총액은 6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제외한다): 40만원 1)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평가를 받는 연구회(연구회 소관 정부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및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장과 그 임직원 2) 법 제2조제2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나,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2. 적용기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 액으로 한다.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 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상대방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1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이 기관이 아닌 개인인 직무관련자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해야 할 필요가 없다.

④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4번

①

여비·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다**. 인사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가족 채용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NoteBase

③

무상 차용도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기한은 **거래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날부터 14일 이내**이다. 별도로 거래 전에 신고를 마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 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④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서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직계존속·비속 등이 수의계약 제한 대상이다. 지휘·감독·규제·지원 업무를 맡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으로 제한 대상을 넓힐 수 없으며, **법정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 · 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 용역 · 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 · 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 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문 17. 코헨(Cohen)과 펠드버그(Feldberg)가 제시한 경찰활동의 윤리적 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이 절도범을 추격하던 중 도주하는 범인의 등 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하는 경우는 '공공의 신뢰' 위반에 해당한다.

② 경찰관이 우범지역인 A지역과 B지역의 순찰업무를 맡았으나, A지역에 가족이 산다는 이유로 A지역에서 순찰 근무시간을 대부분 할애한 경우는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③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를 단속하던 경찰관이 정지명령에 불응하는 오토바이를 향하여 과도하게 추격한 결과 운전자가 전신주를 들이받고 사망한 경우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

④ 경찰이 사익을 위해 공권력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공정한 접근' 위반에 해당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공권력을 사익에 이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을 넘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 위반**이다. '공정한 접근'은 시민에게 경찰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공의 신뢰'는 경찰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공익을 위해 절제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기준이다. 도주하는 절도범의 등에 권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사례는 **필요한 범위를 넘는 강제력 행사**로서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② O: '공정한 접근'은 시민이 치안상 필요에 따라 경찰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받아야 한다는 기준이다. 두 우범지역을 담당하면서 **가족이 산다는 사적 이유로** A지역에 순찰시간을 편중하면 B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서비스가 소홀해지므로 이 기준에 위반된다.

③ O: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은 법 집행 자체보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목적을 중시하는 기준이다. 불법 개조 오토바이를 단속하더라도 **과도한 추격으로 생명의 위험을 키워서는 안 된다**. 정지명령 불응을 이유로 무리하게 추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는 이 기준에 위반된다.

④ X: 공권력을 사익에 이용하거나 필요한 최소한을 넘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 위반**이다. 시민은 경찰이 위임받은 권한을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하리라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접근'은 경찰서비스를 특정인이나 지역에 부당하게 편중하지 않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NoteBase

문 18. 인권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인권행동강령」상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보호담당관은 분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경찰청 인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의 경우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해당한다.

④ 「경찰 인권보호 규칙」상 인권침해사건 조사절차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조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제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환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성별·종교·장애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되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경찰관 인권행동강령 제6조(차별 금지 및 약자·소수자 보호)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병력(病歷), 나이, 사회적 신분, 국적, 민족, 인종,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체적·정신적·경제적·문화적인 차이 등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인권영향평가 이행 여부의 점검 주기는 분기가 아니라 **반기 1회 이상**이다. 각 인권위원회의 간사는 점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제24조(점검) 제13조제2항의 간사는 반기 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소속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NoteBase

③

참가인원·내용·동원 경력의 규모·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시위**는 인권영향평가 실시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3. 참가인원, 내용, 동원 경력의 규모, 배치 장비 등을 고려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집회 및 시위

④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으면 조사담당자는 임의로 제출받은 물건을 **제출자의 요구 없이도 반환할 수 있다**.

경찰 인권보호 규칙 2. 사건이 종결되어 더 이상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

NoteBase

문 19. 경찰활동 전략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중심 경찰활동(community-oriented policing)은 경찰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지역중심 경찰활동과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병행되어 실시될 때 효과성이 제고된다.

③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SARA모형이 강조되는데, 이 모형은 조사(Scanning)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로 진행된다.

④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전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SARA모형을 무관용 경찰활동에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SARA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문제해결 모형**이며, 무관용 경찰활동은 경미한 위반에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선지별 해설

① O: 지역중심 경찰활동은 **경찰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범죄·무질서 등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주민과 경찰이 함께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의 우선순위를 정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므로, 경찰이 일방적으로 문제와 대책을 정하는 방식과 구별된다.

② O: 지역중심 경찰활동이 주민과의 협력 관계를 마련한다면,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반복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적합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을 제공한다. 두 활동을 병행하면 **주민의 정보·참여와 체계적인 문제 분석·대응이 결합**되어 문제해결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③ X: SARA모형은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대표적인 문제해결 모형**이다. 조사(Scanning)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발견하고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 분석(Analysis)에서 발생 원인과 관련 조건을 파악한다.
대응(Response)에서는 분석에 맞는 대안을 선택·실행하고, 평가(Assessment)에서는 대응의 실행 여부와 문제 감소 효과를 확인한다. 따라서 선지의 단계 순서는 맞지만 이를 무관용 경찰활동의 특징으로 연결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무관용 경찰활동은 경미한 법 위반과 무질서에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데 중점을 둔다.

④ O: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특정 문제의 원인에 맞추어 여러 대응 전략의 효과를 검토한다. 경찰의 단속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워 주민·상인·관계 기관의 정보나 참여가 필요하다면 **문제해결에 유용한 협력 전략을 중시**한다. 협력 자체를 언제나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뜻이 아니라, 선지의 '필요시'처럼 해당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협력을 활용한다.

NoteBase

문 2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칙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주거지에서 음악 소리를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한다.

③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법정형으로 볼 때, 두 경범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되지 않아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④ '폭행 등 예비'와 '거짓 광고'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정답 4번

①

범칙행위를 했더라도 **18세 미만이면 범칙자에서 제외**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정의)
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4. 18세 미만인 사람

②

인근소란은 공공장소에서의 행위로 한정되지 않는다. 주거지에서도 **음악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인근소란**에 해당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6.9.29>
21. (인근소란 등)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NoteBase

③

두 행위의 법정형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다. 벌금 상한이 50만원을 넘으므로 경미사건의 체포 제한을 받지 않아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하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5.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1.25, 1980.12.18, 1995.12.29>

④

폭행 등 예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 광고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두 경우 모두 구류 또는 과료로도 처벌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10.24, 2026.9.29>
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2. (거짓 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NoteBase

문 21. 실종아동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견지'는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③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대상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장기실종아동등은 보호자가 찾는 실종아동등 중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5.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②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다르면 **보호 중인 장소를 발견지로 본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8.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③

지명수배·지명통보된 사람은 프로파일링시스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입력 생략은 허용되지만 의무적인 제외는 아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입력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2. 수사기관으로부터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된 사람

NoteBase

④

경찰관서의 장은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에 필요하면**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 확인에 필요한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등)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조의2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아동등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목 · 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8.4, 2017.10.24, 2018.4.17, 2024.3.26>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7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NoteBase

문 2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동행하여 현장출동하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답 1번

①

동행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현장출동)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6>

②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NoteBase

③

증인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판사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를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 · 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NoteBase

문 2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③ 甲의 배우자였던 乙이 甲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이유로 112종합상황실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출동한 경우, 그 경찰관은 해당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응급조치 후에도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NoteBase

②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폭력 제지·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현행범 체포 등 수사,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 신청 가능성 통보와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청구 가능성 고지가 포함된다.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 피해자의 분리
1의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③

가정구성원에는 현재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되며, 폭행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甲이 전 배우자 乙을 폭행한 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1.8.4, 2012.1.17, 2014.12.30, 2016.1.6, 2020.10.20>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 · 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④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소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이거나 그 행위자의 공범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NoteBase

문 2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휴무자를 동원할 수 있다.

②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기타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2번

①

지역경찰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② 지역경찰 동원은 근무자 동원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비번자, 휴무자 순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②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휴게 및 식사시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무는 **대기근무**이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⑥ 지역경찰관리자는 신고출동태세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게 및 식사시간도 대기 근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 순찰팀원에게 상황근무 또는 순찰근무**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게 할 수 있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③ 순찰팀장은 관리팀원에게 행정근무를 지정하고, 순찰팀원에게 상황 또는 순찰근무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근무를 지정하거나 병행하여 수행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NoteBase

④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수행하는 **요보호자·피의자의 보호·감시와 방문민원·신고사건의 접수·처리**는 상황근무에 해당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4조(상황 근무)
①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3.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 · 감시

NoteBase

문 25. 변사사건 및 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당포, 금은방 등에 비치된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과 같이 준현장지문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때에는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켜야 하며, 검시에 참여한 검시 조사관은 변사자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은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외국인의 생체정보·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④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정답 2번

①

준현장지문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이다. 전당포·금은방의 거래대장에 압날된 지문이 이에 해당한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6.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

②

검시에는 **의사를 참여시켜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검시 조사관은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여시킬 수 있다**.

경찰수사규칙 제27조(변사자의 검시 · 검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하는 경우에는 의사를 참여시켜야 하며, 그 의사로 하여금 검안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시 조사관을 참여시킬 수 있다.

NoteBase

③

지문자동검색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외국인의 생체정보·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을 검색**하는 전산시스템과 그 하위 시스템이다.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2.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Automated Fingerprint Identification System)"이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와 외국인의 생체정보 및 수사자료표의 지문을 원본 그대로 암호화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채취한 지문과의 동일성 검색에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및 그 하위 시스템을 말한다.

④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 이웃사람·친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사법경찰관리는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 · 친족, 이웃사람 · 친구, 시 · 군 · 구 · 읍 · 면 · 동의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검시에 참여시켜야 한다.

NoteBase

문 26. 지명수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수사규칙」상 경찰관이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가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보다 지명수배자를 먼저 인계받아 조사해야 한다.

② 「범죄수사규칙」상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경찰수사규칙」상 사법경찰관리가 지명수배자를 발견하였으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④ 「범죄수사규칙」상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여러 건의 지명수배가 있으면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수배한 관서가 거리·교통상 가장 인접한 관서보다 우선**하여 인계받아 조사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9조(지명수배자의 인수 · 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②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 공개수배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공개수배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6월과 12월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 전단을 별지 제37호서식의 중요지명피의자 종합 공개수배에 따라 작성하여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수배 한다.

NoteBase

③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지명수배된 사람(이하 "지명수배자"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준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권리 등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하며 별지 제36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필요하면 지명수배자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한 후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그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④

도서지역의 발견관서 경찰관은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검거 시기를 조율하여,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인 구속영장청구시한이 경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② 도서지역에서 지명수배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명수배자 등이 발견된 관할 경찰관서(이하 "발견관서"라 한다)의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의 소재를 계속 확인하고, 수배관서와 협조하여 검거 시기를 정함으로써 검거 후 구속영장청구시한(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27.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및 진압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이법은 불만집단과 이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자진해산 및 분산하게 하는 정책적 치료법이다.

② 봉쇄·방어는 군중이 중요시설이나 기관 등 보호대상물의 점거를 기도할 경우, 사전에 부대가 선점하여 바리케이트 등으로 봉쇄하는 방어조치로 충돌없이 효과적으로 무산시키는 진압의 기본원칙이다.

③ 세력분산은 일단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부대가 대형으로 진입하거나 장비를 사용하여 시위집단의 지휘·통제력을 차단하며, 수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켜 시위의사를 약화시키는 진압의 기본원칙이다

④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불만집단의 고조된 주장을 이성적으로 사고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을 둔화시켜서 흥분을 가라앉게 하는 정책적 치료법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부각하여 자진 해산·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경쟁행위법**이다. 전이법은 다른 사건이나 행사로 **관심을 옮겨 원래 쟁점을 약화**시키는 방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대중의견을 부각하여 집단을 위축시키고 자진 해산·분산을 유도하는 것은 **경쟁행위법**이다. 전이법은 관심을 끌 만한 다른 사건이나 큰 행사를 통해 집단 또는 국민의 관심을 옮겨, 원래의 불만이나 쟁점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선지는 경쟁행위법의 내용을 전이법으로 잘못 설명하였다.

② O: 봉쇄·방어는 군중의 점거가 예상되는 중요시설이나 기관을 **경찰부대가 사전에 선점**하고 바리케이드 등으로 접근을 막는 방법이다. 보호대상물을 미리 확보하여 점거 기도 자체를 무산시키므로, 충돌 없이 시설을 방어하려는 원칙에 해당한다.

③ O: 세력분산은 **시위대가 집단을 형성한 이후**에 부대의 진입이나 장비 사용으로 집단을 여러 소집단으로 나누는 방법이다. 집단 전체의 지휘·통제 연결을 끊어 결집된 힘과 시위 의사를 약화시키는 데 중점이 있다.

④ O: 지연정화법은 **시간을 두어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다. 고조된 감정이 누그러지도록 시간을 지연하면서 불만집단이 자신의 주장과 상황을 이성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갖게 한다.

NoteBase

문 28.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에 대한 3선 개념 중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검문조·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 기도자의 접근을 차단한다.

② 「공직선거법」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이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에 의해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시 개표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

③ 「공직선거법」상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직선거법」상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제3선은 **개표소 울타리 밖에서 위해가 내부에 도달하기 전에 발견·차단**하는 외곽 경비선이다. 검문조는 접근자를 확인하고 순찰조는 주변의 이상 움직임을 살피므로, 두 활동을 함께 운용하여 위해 기도자의 접근에 대응한다.

②

원조 요구로 개표소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퇴거하여야 한다**. 퇴거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⑤제3항의 요구에 의하여 개표소안에 들어간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구 · 시 ·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가 회복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개표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

NoteBase

③

투표소 안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이나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언동을 하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이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면 투표소 또는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④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질서유지를 위해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64조(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①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8.4>

NoteBase

문 29. 「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비상근무의 종류별 정황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 작전비상 - 갑호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
㉡ 교통비상 - 을호 - 농무, 풍수설해 및 화재로 극도의 교통혼란 및 사고발생시
㉢ 경비비상 - 병호 -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증가하여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수사비상 - 갑호 - 사회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중대범죄 발생시

① ㉠(O) ㉡(X) ㉢(X) ㉤(O)
② ㉠(O) ㉡(X) ㉢(O) ㉤(O)
③ ㉠(X) ㉡(X) ㉢(O) ㉤(X)
④ ㉠(O) ㉡(O) ㉢(X) ㉤(X)

정답 1번

㉠

대규모 적정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징후가 현저한 경우는 **작전비상 갑호**의 발령 정황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SZBgtUX3ut69ZNIWQb2c6vKO1plvc622/view?usp=drivesdk

㉡

농무·풍수설해·화재 등에 따른 대규모 교통사고 등 교통혼란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는 **교통비상 갑호**에 해당한다. 을호는 이러한 교통혼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이다.

https://drive.google.com/file/d/1NP69pmH8WC3BEqWuk__GKUurdIZHsbaq/view?usp=drivesdk

NoteBase

㉣

국제행사·기념일 전후의 치안수요 증가로 가용경력의 50%를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을호 경비비상**에 해당한다. **병호비상의 동원 한도는 가용경력의 30%**이다.

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7조(근무요령)
①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을 판단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2. 을호 비상
가.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3. 병호 비상
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가용경력 30%까지 동원할 수 있다.

㉡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중대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비상 갑호**를 발령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F33oc9hELvM8RO-RBu86MAjjBqzv8OKA/view?usp=drivesdk

NoteBase

문 30. 재난 및 대테러경비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②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C급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③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상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경찰 재난관리 규칙」상 시·도경찰청 등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시·도경찰청등에 재난대책본부가 설치되었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경계'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4번

①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29, 2011.3.29, 2012.2.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4.12.30, 2015.7.24, 2016.1.7, 2017.1.17, 2017.7.26, 2018.9.18, 2019.3.26, 2019.12.3, 2020.6.9, 2020.12.22, 2021.6.8, 2023.5.16, 2024.1.16, 2025.1.7>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 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

NoteBase

②

C급은 테러로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되면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이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3. C급 :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③

테러위험인물에는 테러단체 조직원과 테러단체 선전·테러자금 모금·기부·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한 사람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2021.7.20>
3. "테러위험인물"이란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자금 모금 · 기부, 그 밖에 테러 예비 · 음모 · 선전 · 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④

시·도경찰청등의 장은 관할 지역에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기상특보·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난대책본부 설치나 '경계' 경보를 이유로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한 규정은 아니다.

경찰 재난관리 규칙 ① 시 · 도경찰청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2치안종합상황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에 따라 관할 지역 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2. 관할 지역 내 기상특보 발령, 유관기관 요청 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NoteBase

문 31. 「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 및 현장도면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 현장도면 작성시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과 정차지점을 실선으로 표시한다.

② 교통조사관이 교통사고 현장도면 작성시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에 대한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③ 교통사고 현장에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④ 경찰공무원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사고현장 전·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 중앙에 놓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되, **이동지점은 점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⑦ 교통사고의 발생지점과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을 표시하는 때에는 사고발생 지점을 도면의 중앙에 배치하고 가해차량의 진행방향이 위로 향하도록 하여 이동지점을 점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②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할 때에는 **각 지점에 명칭을 붙여 특정**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④ 거리를 측정하거나 지점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점의 명칭을 붙여 특정지어야 한다.

③

의식이나 호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망을 단정해서는 안 되며, **의료전문가가 판단하기 전까지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1. 단순히 의식이 없거나 호흡이 정지하였다는 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판단이 있을 때 까지는 중상자와 동일하게 취급

NoteBase

④

사상자 구호·현장보존 등으로 교통을 일시 통제하거나 일방통행 조치를 할 때에는 **사고현장 앞뒤의 적합한 위치에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교통사고 조사규칙 제6조(교통통제 및 회복 등)
①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사상자 구호, 현장보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교통사고 조사 중" 표지판을 사고현장 전 · 후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고, 반드시 1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차량과 군중을 정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2. 다음 ㉠부터 ㉣까지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정답 4번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은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이다. 그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NoteBase

㉡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운전은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이다. 그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 침범 또는 법에서 금지한 횡단·유턴·후진은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이다. 그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NoteBase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운전은 처벌 특례의 예외 사유이다. 그 행위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NoteBase

문 33. 어린이 보호구역 및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②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또는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로 도시지역의 간선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④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시장등은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主)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나,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2번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음을 표시하며 도로를 주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질러서는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개정 2014.12.30>

②

보호구역에서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이다. 이면도로는 도시지역에서 간선도로 외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
① 시 · 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 · 시간대별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4. 이면도로(도시지역에 있어서 간선도로가 아닌 도로로서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 운영하는 것

NoteBase

③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전액 배상이 가능한 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 등) 법 제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0.8, 2008.12.31, 2011.12.6, 2011.12.8, 2012.9.7, 2013.3.23, 2014.11.19, 2014.12.31, 2016.1.6, 2017.7.26, 2020.11.10, 2024.12.31, 2025.4.8>
3.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④

시장등은 조사 결과 지정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주 출입문 기준 **반경 300미터 이내**의 일정 도로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교통여건과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반경 500미터 이내까지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보호구역의 지정)
⑥ 시장등은 제4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호구역으로 지정 · 관리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主) 출입문(출입문이 없는 장소의 경우에는 해당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시장등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 또는 장소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4.20>

NoteBase

문 34.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주·정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②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은 주차금지 장소에 해당한다.

③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④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답 1번

①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인수하지 않으면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보관장소 등을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3조(주차위반 차의 견인 · 보관 및 반환 등을 위한 조치)
③ 경찰서장, 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차를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되어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의 보관장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도로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는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이다.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22>
2.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NoteBase

③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주차하려는 운전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시간과 금지사항**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 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④

경사진 곳에서 정차·주차하려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임목 설치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리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도로 외의 경사진 곳**도 포함된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3(경사진 곳에서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도로 외의 경사진 곳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操向裝置)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NoteBase

문 35. 집회현장에서의 확성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경우 행사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행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그 밖의 지역'의 소음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소음측정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③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서 주거지역의 주간(07:00~해지기 전)시간대 등가소음도(Leq)는 65dB 이하이다.

정답 1, 4번

①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 행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는 행사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비고
7.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사(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한다)의 진 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에 대해서는 그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위 표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적용한다.
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경일의 행사

②

대상소음이 있을 때의 측정값은 **측정소음도**이고, 같은 장소에서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값은 배경소음도**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비고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 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 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이 경우 배경소음도가 위 표의 등가소음도 기준보다 큰 경우에는 배경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소음도 기준 으로 하고, 등가소음도 기준에서 20dB을 더한 값을 최고소음도 기준으로 한다.

NoteBase

③

주최자가 기준을 초과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관할경찰관서장은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 또는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확성기등 사용의 제한)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주거지역의 주간(07:00~해지기 전) 등가소음도 기준은 **60dB 이하**이다. 다만, 배경소음도가 이 기준보다 크면 **배경소음도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https://drive.google.com/file/d/1yvXQjS-B92uVGccXYB47UtmBjfr4CGr3/view?usp=drivesdk

NoteBase

문 36.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참가자들이 교통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나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1개 차로에서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약 15분 동안 연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최행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④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정답 2번

①

장례·노제를 위한 추모의 범위에서는 사전신고가 면제되지만, 그 범위를 넘어 다른 공동의 목적으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며 대외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시위에 해당하여 사전신고가 필요**하다.

한편 집시법 제15조는 관혼상제 등에 관한 집회에는 옥외집회의 경우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집시법 제6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관혼상제에 해당하는 장례에 관한 집회가 옥외의 장소에서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그 집회에 관해서는 사전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예컨대 그 집회참가자들이 망인에 대한 추모의 목적과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제 등을 위한 이동·행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기회를 이용하여 다른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하는 행위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는, 이미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하므로 집시법 제6조에 따라 사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NoteBase

②

신고범위의 뚜렷한 일탈 여부는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을 종합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하였는지**로 판단한다. 신고한 행진로의 하위 1개 차로에서 전체 3시간 30분 중 두 차례에 걸쳐 합계 약 15분간 연좌하였고 더 큰 교통혼잡도 없었다면, **연좌 사실만으로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은 이미 신고한 행진 경로를 따라 행진로인 하위 1개 차로에서 2회에 걸쳐 각 약 5분, 약 10분 등 총 약 15분에 걸쳐 연좌를 하였는바, 연좌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이미 신고한 집회방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은 없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진 집회시간 동안 신고한 방법을 벗어나 이루어진 연좌시간도 불과 약 15분에 불과하며,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연좌를 한 이유 또한 교통에 방해를 초래할 행진을 빨리 끝내 시위를 조속하게 종료하고자 하였던 것이고, 2회에 걸쳐 하위 1개 차로에 연좌함으로 인하여 더 큰 교통혼잡이 야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옥외집회 등 주최행위가 신고한 목적, 일시,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제1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425 판결)

③

여러 사람이 같은 장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집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목적**이 단순한 모임과 집회를 구별하는 기준이며, 그 목적 아래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제2조 제2호에서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회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6294 판결)

NoteBase

④

신고사항에 미비가 있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도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미신고 집회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산·저지할 수 없고, 그 미비·일탈로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되어야 제한할 수 있다. 제한조치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따라서 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하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그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내용과 동일성이 유지되어 있는 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관할 경찰관서장으로서는 단순히 신고사항에 미비점이 있었다거나 신고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당해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자체를 해산하거나 저지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사항 미비점이나 신고범위 일탈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된 경우에 비로소 그 위험의 방지·제거에 적합한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되, 그 조치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98다20929 판결)

NoteBase

문 37. 외국인 관련 사건처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법」상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는 합중국 군 당국의 전속적 재판권 범위에 포함된다.

③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교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상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 구역안에서 구속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정답 2번

①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 중이면 법원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범죄인 인도법 제14조(법원의 인도심사)
② 법원은 범죄인이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이 경합하는 경우, 공무집행 중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합중국 군 당국이 **전속적 재판권이 아니라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 제3항 (가) (2)
第22條 刑事裁判權
3. 裁判權을 行使할 權利가 競合하는 境遇에는 다음의 規定이 適用된다.
(가) 合衆國 軍 當局은 다음의 犯罪에 關하여는 合衆國 軍隊의 構成員이나 軍屬및 그들의 家族에 對하여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2) 公務執行中의 作爲 또는 不作爲에 依한 犯罪(나) 其他의 犯罪에 關하여는 大韓民國 當局이 裁判權을 行使할 第一次的 權利를 가진다.

NoteBase

③

국제형사경찰기구와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협력을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38조(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협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제형사경찰기구로부터 외국의 형사사건 수사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받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에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국제범죄의 정보 및 자료 교환

④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 구역에서 구속되면 접수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본인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체 없이 파견국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간의 영사협약 제39조구속 및 재판에 대한 기능
1. 파견국 국민이 영사관할 구역안에서 구속된 경우, 접수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지체없이 파견국의 영사기관에 통보한다.

NoteBase

문 38.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이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중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을 인수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④ 피호송자의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나,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정답 3번

①

간이검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지 않고**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확인하며, **신체검사의 착용은 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

②

입감·출감은 **유치인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지휘서**에 따라야 한다. **동시에 3명 이상을 입감시키면 경위 이상 경찰관의 입회 아래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①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보호 주무자가 발부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의자 입감 · 출감 지휘서에 의하여야 하며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③

호송 중 피호송자가 도주하면 그 사람에 관한 호송관계서류와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다.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NoteBase

④

금전과 유가증권은 **호송관서가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액이거나 당일 호송을 마칠 수 있으면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경찰청)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1. 금전, 유가증권은 호송관서에서 인수관서에 직접 송부한다. 다만 소액의 금전, 유가증권 또는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에게 탁송할 수 있다.

NoteBase

문 39.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법」상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해당된다.

③ 「보안관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안'에는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에 관한 사안도 해당된다.

④ 「보안관찰법」상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번

①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 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인수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보안관찰법 제20조(보호)
③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또는 피보안관찰자중 국내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인수를 거절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보안관찰해당범죄는 법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되며, **일반이적죄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안관찰법 제2조(보안관찰해당범죄) 이 법에서 "보안관찰해당범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88조 · 제89조(第87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 제90조(第87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 제92조 내지 제98조 · 제100조(第99條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및 제101조(第99條에 해당하는 罪를 제외한다)

형법 제99조(일반이적) 제92조부터 제98조까지에 기재한 이외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NoteBase

③

‘사안’에는 보안관찰처분청구뿐 아니라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에 관한 사안도 포함**된다.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0.1>
1. "사안"이라 함은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④

피보안관찰자는 **주거 이전·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는 여행 전에** 거주예정지·여행예정지 등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거소를 제공받은 사람이 주거를 이전하려면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 제18조(신고사항)
④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 · 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에 의하여 거소제공을 받은 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제20조제5항에 의하여 거소변경을 신청하여 변경결정된 거소를 거주예정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3>

NoteBase

문 40. 통신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통신비밀보호법」상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2, 4번

①

법원·검사·수사관서의 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 · 제3항 · 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통신이용자정보"라 한다)의 열람 또는 제출(이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12.29>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NoteBase

②

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검사의 요청권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 목적에 한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범죄수사 등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수사처검사등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검사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불법검열로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과 불법감청으로 지득·채록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뿐 아니라 징계절차에서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1.29, 2005.1.27>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다. 발 · 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NoteBase